

[별표 1의2] <개정 2006.5.3>

다중이용시설(제2조제1항제11호의2관련)

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점·백화점·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2. 「항공법」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
3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
4. 「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철도역사
5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
6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호텔·관광객이용시설 및 종합유원시설 중 전문·종합휴양업으로 등록한 시설
7. 「한국마사회법」에 따른 경마장
8.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
9. 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
10. 「항만법」에 따른 종합여객시설
11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시설